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2. 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이 '22.4.14일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의 요건 중 전문 강사에 대한 요건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함

나.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개정령안('22.4.14. 시행)에서 규정하므로 동 내용을 삭제

다. '21.4.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영 제4조제1항1호의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이 법 제13조제10호의2에서 규정되었으므로 동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법 제13조제10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7조제1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전문강사의 요건) 영 제32조의3제1호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퇴직급여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17조에 따른 겸임 교원 또는 명예교수로서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① 「 <u>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① <u>법 제13조제10호의2</u> -----		
1. 2. (생략)		-----		
3. 특별부담금: 법 제16조에 따라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적립금이 영 제7조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		
② ~ ⑦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		
1.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		-----		
		<u>「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②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업장 등에 상시 게시할 것.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확정
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라.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3.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4.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 후

<u>단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영 제32조에 따른 교육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u>	
<u>제10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영 제36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은 제4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다.</u>	<u>제10조(전문강사의 요건) 영 제32조의3제1호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 <u>1.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u> <u>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퇴직급여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u>

	<u>는 자</u>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u>에 따른 교육 또는 제17조에</u> <u>따른 겸임교원 또는 명예교수</u> <u>로서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u> <u>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u>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u>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u> <u>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u> <u>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u> <u>람</u>
--	---